

-영국편-

김태선  
동아일보 비서부장(부국장대우)

1 천 여년의 오랜 의회민주주의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언론과 정치, 특히 선거에 있어 특별한 관행이나 엄격한 법적 규제가 취해지고 있지는 않다. 신문, 잡지 등 활자미디어는 국민 개개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과 똑같이 보도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만큼 신문발행의 요건이나 자격을 규정하는 법령 따위는 아예 없다. 다만 신문의 경우 우편제도에 의한 염가의 발송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신문등록 제도가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회사가 신문을 소유하는 경우, 그 범위를 규정한다든가, 신문 소유주의 그 자산을 처분할 경우, 독과점규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기소되기 전 형사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는 규제 받으며, 지방행정기관회의 때 기자대표가 참석할 취재의 권리를 갖고 있다.

□ 서울대농대 농공학과

□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주영특파원 역임

□ 저서 : 「불확실성의 시대」(역서), 「제 3의 파도」(역서)

□ 현재 동아일보 비서부장

법적으로 규제되는 대상은 이른바 사생활보호범주에 드는 법정에 계류중인 이혼 문제라든가, 가정문제, 강간사건에 대한 보도들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보도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불량상정이나 사기목적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선전행위,

공중보건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약 선전을 위한 광고 등은 못하게 되어 있다. 신문·출판엔 관한 법적규제는 이밖에도 전신법상 통제를 받는 신문의 전신 전송업무에 관한 신문소유주와 우체국간의 협약에 가해지며 현상 및 경품행위에 대한 규제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침해 행위에도 적용된다. 특히 언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법적규제는 명예훼손과 법정 모욕죄이다. 법정에 계류중인 사건이나 기소되기 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이 일체 논평을 못하게 되어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국가 비밀에 속한 정보를 입수 보도하는 행위는 국가 기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신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부나 집단에 대해 선동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에 대한 이와 같은 형사소추는 그리 흔치 않다. 대개 개인에 의한 명예훼손고소사건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 기자는 물론이거니와 편집인을 비롯해, 소유주, 발행인, 인쇄인, 신문의 배포책임자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의 명예는 불공정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을 비만하거나 비판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고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 쓰여진 것이거나 영구적인 형태를 띤 것일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말로만 행해졌을 때에는 모략 중상에 해당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라디오나 텔레비전방송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방송은 기록성이 없기 때문에 비방이나 중상 죄가 배제되고 인쇄, 출판물처럼 기록성이 있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일이라든지, 성공할 가망성이 있는 것에 대해 비방하거나 중상할 경우 소송 제기인인 원고는 피고가 발설한 내용이, 첫째 모략중상이라는 사실, 둘째 피고의 관련사실, 셋째 남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가지가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답변이 정당하다고 하는 변명으로 성립되거나 공명정대한 논평이나 특권이 있을 경우는 저촉되지 않는다. 법률조항은 중상 비방에 대한 개념이나 적용범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말로 행해지는 중상비방이란 어떤 것이고 출판물에 의한 경우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며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어떤 것이라라고 성격상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저촉여부는 배심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다.

굳이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비방이란,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 원고가 지나치게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논평을 위협시키고 있다 남의 도덕성이나 정직성을 비판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방한다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TV 텔런트의 어떤 연기가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공연과 관련된 논평을 쓸 경우는 안전하다. 하지만 텔런트로서 능력이 없다고 시사하는 경우는 비방이 되기 십상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의 보편적인 능력을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런 경우도 있다. 전혀 고의성 없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기사나 사진을 읽거나 들은 제삼자가 소송의 수단으로 삼을 때

언론은 풍자에 의한 비방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다. 어떤 남녀의 약혼사진을 신문이 실었다고 하자 짝막한 캡션(설명)을 붙여서 말이다. 사진이 보도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기혼자였고 그 본 부인을 아는 남들이 이 사진을 보았다는 것을 그 부인이 입증하기만 한다면 신문은 꼼짝없이 풍자에 의한 비방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 비방이란 특정인을 지칭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가 그 피해자라고 하면서 떼지어 소송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도시에서 식당들이 손님들의 눈을 속여 청구서에 실 금액보다 더 적어 넣고 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갔다고 하자 법정에 의해 문제가 보편성을 띤 것으로 판정 났을 경우 개별식당은 이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동업자가 아닌 한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서 소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때 비방을 당한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며 자기가 비방의 대상임을 명백히 입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비방죄는 반드시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만이 소송을 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손해를 받았니 마니하고 따질 존재가 될 수 없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친구나 가족, 친척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 못하게 되어 있다. 비방이나 중상 모략죄가 성립되려면 그 비방한 글 또는 인쇄물이 출판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 또는 구전된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 제삼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 둘만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라고 비난했다고 치자. 이런 때에는 비방죄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제삼자가 들었다고 한다면 비방죄는 성립된다.

소송을 통해 비방 당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일에 관해 남을 험담한다든가, 엉뚱한 사람을 보고 죄를 범한 것처럼 넌지시 비친다든가, 여성에게 품행이 나쁘다고 홍보는 것(이 경우 남성에게 예외이다), 남에게 전염성 질환(특히 성병)을 가졌다고 넌지시 비치는 행위 등 모두가 비방죄에 해당한다. 영국 사람들은 이 비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가를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한번 소송에 휘말렸다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남을 비방한 것 같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즉각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만약 비방죄가 성립될 것으로 변호사가 판단한다면 지체 말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일 경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 등의 경우는 당사자에게 아무리 적절한 문구로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은 피고측이 모두 물게 된다. 변호사가 보기에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안되고 손해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양쪽 변호사끼리 합의해서 처리하는 수도 많다. 대개 합의서엔 위자료금액과 사과문-보통은 공개법정에서 행해지거나 신문이나 출판물에 실리는 게 관례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요건이 된다. 비방 또는 중상모략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에 현저한 손상을 입혔다거나 삶의 안정을 해쳤다면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추는 어떠한 개 인이나 정부당국에 의해서도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크게 손상 받지 않았다고 여기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를 않는 수도 더러 있다. 신문사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소추는 법관의 허가 없이는 신문의 소유주나 편집인 또는 신문발행 책임자 어느 누구에게도 가해지지 않는다.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소추된 사건은 일반 민사법정으로 다시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 당한 측에 가해진 것만으로 충분히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비방죄처럼 제삼자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비록 사망했을지라도 형사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는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에 대립되는 영국인 개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는 오랜 의회민주주의제도에 연유한다. 영국 사람들은 시민권의 행사가 오랜 정치제도나 사법제도를 통해 꾸준히 지켜져 왔고 또 부단히 신장되어 왔음에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제 12 조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정의 사생활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며, 남의 명예나 명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은 누구나 이러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조문한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뜻하는 모든 영역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편물이나 전화도청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법령이 있고 고도의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현대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때 그 때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범람하고 있는 컴퓨터로부터 개인의 사적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 84년 제정됐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생활보호는 법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국민 스스로의 자구 의지에 힘입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 언론과 정치활동

「신문이 없고서는, 또 방송이 없고서는 오늘의 민주정치(Self-Government)란 전혀 기능 할 수 없다」고 ITV(독립상업방송기구)이사장을 지낸 오버츠 프레이저 경은 영국정치에 있어 언론의 중요성을 설파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은 언론의 점증하는 역할을 잘 알고있으며 보수 노동 양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의회·민주연합당(SDP)의 것도 국민 앞에 소상하게 소개되고 또한 비판 받는다. 특히 공영방송인 BBC와 민간상업방송 ITV는 총선거 기간 중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선거 방송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총선 때는 보수 노동 양당에 10분짜리 텔레비전방송프로 5개와 라디오방송프로 7개(10분짜리 프로그램 4개 및 5분짜리 프로그램 3개)를 제공했다. 보수당은 5분짜리 텔레비전프로그램 4개와 10분짜리 프로그램 한 개를 채택한 반면, 노동당은 10분짜리 프로그램 5개를 택했다. 두 당이 똑같이, 라디오프로는 5분짜리 3개와, 10분짜리 4개를 방영했다. 사회·민주연합당은 10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4개와 6개의 라디오프로(5분짜리 3개, 10분짜리 3개)를

이용, 유권자들에게 자기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당수의 연설 등을 통해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83년 총선결과 하원의석분포는 보수당이 과반수를 144 석이나 초과하는 397 석(유권자투표 1 천 3 백 1 만 표)을 차지한데 비해 노동당은 209 석(8 백 4 십 5 만 6 천 표 지지), 자유·사민연합세력이 23 석(778 만 표), 그 밖의 군소정당이 1~2 석 내지 11 석까지 21 석을 갈라 가졌다. 1979년 총선 때는 노동 보수 양당이 정당별 선거방송에서 10 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5 개씩, 라디오프로그램 7 개 (10 분짜리 프로그램 4 개, 5 분짜리 3 개)를 방송했고 「웨일즈」 애선 웨일즈 국민당이 10 분짜리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씩을 얻어 선거운동을 했다. 이밖에 총선 당시 입후보자 50 명 이상을 낸 정당에겐 5 분짜리 TV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하나씩을 배정, 정당별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총선기간 중에 실시되는 이와 같은 선거방송은 하원에 진출해 있는 각 정당대표를 비롯해서 BBC 와 ITV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마련하곤 한다. 영국전역 39 개 도시에 자체 스튜디오와 방송센터를 갖고 있는 BBC 는 산하 2 만 7 천명의 방송 요원들로 하여금 라디오방송이 매주 5 백 7 십 시간, 텔레비전방송이 매주 1 백 6 십 시간씩 방영되는데 텔레비전방송이 BBC 1, BBC 2 의 두개, 라디오는 제 1,2,3,4 방송의 4 개국을 거느리고 있다.

영국 방송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개념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전역을 커버하는 기본 방송 서비스를 뜻하며 이 밖에도 전세계 36 개 국어로 나가는 외국어방송과 매주 2 백 1 시간씩 방송되는 BBC 「월드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선거방송말고도 영국의 공영 및 민간방송기구는 선거에 관한 일반프로를 내보내고 있으며 선거유세가 열기를 띄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를 쏟아낸다. 영국에서는 TV 나 라디오 어느쪽도 공 · 민영을 가릴 것 없이 정당의 무료정치광고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방송의 엄격한 공영성이다. 신문의 경우는 방송과 달라서 선거공영제의 규제권 밖에 있다. 총선 때가 되면 정당별로 정강정책과 주요선거공약을 일간지에 광고로 내보낸다. 선거유세가 전국규모로 중앙당이 주축이 돼서 실시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각 선거구별로 입후보자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보수, 노동양대정당과 민주·사민연합세력 등 전국규모의 정당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거의 매일 당수 또는 버금가는 당 수뇌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유세현황과 그때 그 때 자당의 선거전략, 유권자들의 호응도를 자기나름대로 분석, 홍보하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 이슈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선거유세활동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TV 선거방송이 실시되기 전인 1951 년엔 유권자의 82%가 라디오방송으로 나오는 선거유세를 들었으나 1959 년엔 TV 선거 방송프로그램 시청률이 전체 유권자의 1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4 년 총선기간 중 막바지 BBC ITV 황금시간대의 선거방송프로그램 시청률은 14%로 높아졌고 근년에 와서 정당선거방송에 귀 기울이는 시청자수는 총유권자의 4 분의 1 을 차지할 만큼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보도에 있어 유권자의 반응이나 여론조사선거구별 당선 예상자, 정당별

의석확보 숫자 등은 갤럽조사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조사통계기관, 저명한 연구소 등의 발표자료가 수시로 인용되고 있고 신문의 성격에 따라 보수당지지를 표방할 「더 타임즈」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같은 권위지들이 있는가 하면 진보중도세력지지를 공공연히 내세워 사설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등 여론과 의견표출 등 자연스러운 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